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6.7.(수)까지 우리 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김석기의원 (22240)	식품 등의 의무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 (제4조제2항 신설)	'23.5.24.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협회, 본부(56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주무관 **정현정** 사무관 **이지영** 식품표시광고정 책과장 **김철희** 전결 2023. 5. 26.

협조자

시행 식품표시광고정책과-7644 (2023. 5. 2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183 팩스번호 043-719 / silverjung@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